

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5. 9. 8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8월 31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5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 -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5. 9. 8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김광우)

가. 제안이유

- 2005. 5.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(조례 제626호) · 공포되어 2005. 7.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, 또한 2005. 1.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”로 정비함.
-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기금운용관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기금출납원 “치수관리담당주사”를 “재난관리담당주사”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변경함 (안 제6조).
- 2005. 7.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, 간사 “치수관리담당주사”를 “재난관리담당주사”로 변경함 (안 제8조)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5. 討 論 要 旨 : 없 음

6. 審 查 結 果 : 원안가결

7. 少數 意見의 要旨 : 없 음

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